

강원도립대학교 방송국 운영 규정

(제정) 2013-07-01 규정 제325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명칭) 본 국은 강원도립대학교 방송국(이하 “방송국”)이라 칭한다. <개정 2016.4.25>

제2조(위치) 본 국은 강원도립대학교 내에 둔다. <개정 2016.4.25>

제3조(목적) 방송국은 교내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여론형성 및 비판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며 건설적이고 품격있는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제4조(업무) 본 국은 다음 사업을 한다.

1. 강원도립대학교 교내 방송 <개정 2016.4.25>
2. 기타 본 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구성) 본 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방송국장
2. 주간
3. 실무국장
4. 기술부장
5. 연출부장
6. 기획부장

제6조(임명) ① 주간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국장 및 부장은 방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며 주간이 임명한다

③ 부원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며 부장의 추천으로 주간이 임명한다.

제7조(직무) ① 방송국장은 총장이 당연직이 되고 국을 대표한다.

② 주간은 본 국의 운영 및 방송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방송국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실무국장은 학생국원을 대표하며 각 부장들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각 부의 부장은 방송 전반의 업무를 각 부원에게 교육하고, 본인이 맡은 방송을 담당하며, 주간을 보좌한다.

⑤ 각 부의 부원은 방송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, 부장을 보좌한다.

제8조(임기)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자격상실) 방송국원은 졸업, 휴학, 징계 및 방송국 또는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
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.

제10조(퇴사) 방송국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주간이 퇴사를 명할 수
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방송회의에 불참하였을 때.
2. 방송 및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 불성실한 경우
3. 방송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나 발언을 하였을 때

제11조(방송회의) ① 방송국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방송회의를 운영
할 수 있다.

② 방송회의는 주간, 실무국장,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하며, 주간이 의장이 된다.

제12조(방송) ① 방송활동은 방송회의를 거쳐 주간의 승인을 받은 운영계획서에 따라야 한다.

② 방송 송출은 방송회의를 거쳐 월 단위로 작성된 방송계획서에 따른다.

제13조(운영위원회) ①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주간, 교학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종합정보관장을 포함하여
8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.4.25>
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간으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 규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방송국 활동에 관한 사항

제14조(재정) 본 국의 재정은 본교의 예산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1. 방송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외에 급량비를 편성할 수 있다.

부 칙(2013. 7. 1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강원도립대학교 신문사 운영규정

(제정) 1999-11-22 규정 제061호

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55호

(개정) 2013-07-01 규정 제326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명칭) 본 사는 강원도립대학교 신문사(이하 “신문사”)라 칭한다. <개정 2016.4.25>

제2조(위치) 본 사는 강원도립대학교 내에 둔다. <개정 2016.4.25>

제3조(목적) 신문사는 대학인 상호간의 학구열을 드높이며 건설적인 의견과 비판으로 여론 창달을 기하고 언론기관으로서 기본적 사명을 다하여 본 대학의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업무) 본 사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강원도립대신문(이하 “신문”이라 칭한다.) 발간
2. 기타 본 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신문발간) 신문은 연2회 발간하며, 신문사의 사정에 의해 발행회수 및 면수를 조정할 수 있다 <개정 2013.7.1>

제6조(구성) 본 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본사에는 사장, 주간, 논설위원, 학생기자단(이하“기자단”이라 한다.)을 둔다 <개정 2013.7.1>
- ② 기자단은 편집국장, 정 기자 및 수습기자로 구성한다.

제7조(임명) ① 사장은 총장이 겸하며, 주간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논설위원은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수는 약간 명으로 한다.
- ③ 주간은 논설위원을 겸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3>
- ④ 삭제 <개정 2013.7.1>
- ⑤ 편집국장, 정기자, 수습기자는 재학생 중에서 공개 모집하여 주간이

임명한다. <개정 2013.7.1>

- ⑥ 삭제 <개정 2013.7.1>
- ⑦ 삭제 <개정 2013.7.1>

제8조(직무) ① 사장은 본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.

- ② 주간은 본사의 운영 및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, 신문사 구성원을 지휘 감독한다. <개정 2013.7.1>
- ③ 삭제 <개정 2013.7.1>
- ④ 편집국장은 정 기자 및 수습기자를 지휘하고, 신문 제작에 관한 편집 및 취재업무를 담당하며, 학생기자를 대표한다.
- ⑤ 정 기자는 기사를 취재하고 주간의 승인을 받은 편집계획에 따라 신문을 편집한다.
- ⑥ 수습기자는 편집 및 기사 작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 기자를 보좌한다.

제9조(임기) ①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논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자격상실) 학생기자는 졸업, 휴학, 징계 및 신문사 또는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.

제11조(퇴사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기자는 주간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편집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2. 신문의 편집 및 제반업무 수행에 있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였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
3. 취재 중에 취득한 사실을 주간의 허락 없이 사전에 누설하였거나 공포하였을 때

제12조(기획 및 편집회의) ① 신문의 기획방향 설정을 위한 기획회의와 기획안을 토대로 세부 편집방향을 설정하는 편집회의를 둔다.

② 기획회의는 주간, 편집국장 및 각 부장으로 구성하며, 주간이 의장이 된다.

③ 편집회의는 편집국장 및 학생기자로 구성하며, 편집국장이 의장이 된다.

④ 편집회의 결과는 주간의 지도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편집 및 취재활동) 신문의 편집 및 취재활동은 편집회의를 거쳐 주간의 승인을 받은 편집계획서에 따라야 한다.

제14조(운영위원회) ① 신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주간, 교학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종합정보관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7.1> <개정 2016.4.25>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신문 편집에 관한 사항
2. 기타 신문사 운영에 관한 사항
3. 사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

제15조(재정) 본 사의 재정은 본 교의 예산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1. 신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외에 급량비를 편성할 수 있다.

부 칙(1999. 11. 22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3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7. 1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